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

제정 2016.03.23. 국립무형유산원 고시 제2016-3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 전수자의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수교육”이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또는 제30조에 따라 보유자 및 보유단체, 전수교육대학이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2. “전수자”란 법 제25조 및 제30조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종목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 전수교육대학으로부터 그 종목의 기능·예능을 교육 받은 자를 말한다.
3. “이수심사”란 법 제26조제1항 및 「무형문화재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이수증을 발급하기 위하여 전수자의 기량 정도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4. “이수증”이란 법 제26조제1항과 영 제23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전수교육 과정을 수료한 자로서 그 기량을 심사하여 그 기능·예능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되어 이수자에게 발급하는 증서를 말한다.
5. “이수자”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3년 이상의 전수교육 과정을 수료하고 그 기량을 심사하여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6. “개인종목”이란 법 제17조 및 영 제16조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를 지정하면서 보유자를 인정하는 종목을 말한다.
7. “단체종목”이란 법 제17조 및 영 제16조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를 지정하면서 보유단체를 인정하는 종목을 말한다.

제3조(이수심사 대상) ① 법 제26조 및 영 제23조에 따른 이수심사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보유자 없는 보유단체를 포함한다)로부터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3년 이상 받은 전수자

2. 법 제30조에 따라 대학등에서의 전수교육을 수료한 전수자

②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 기간은 해제된 보유자와 그를 승계한 보유자로부터의 전수교육의 합이 3년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4조(규정의 적용 범위)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 본 규정 및 기타 문화재청(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소관 훈령, 지침 등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침 및 기준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장 이수심사운영위원회

제5조(이수심사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국립무형유산원장은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과 관련한 사항을 검토 및 자문하기 위하여 이수심사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 라고 한다)를 운영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검토 및 자문한다.

1. 보유자·보유단체로부터 신청된 종목을 검토하여 당해연도 이수심사 대상 종목 선정
2. 이수심사를 위한 전문가의 추천
3. 당해 이수심사 계획 검토 및 자문
4. 기타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심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자문 등

제6조(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등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전승지원과장, 무형문화재과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이 되며, 전승지원과장이 위원장이 된다.

1.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통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한다.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위원장이 된다.
2. 간사는 위원회의 소집, 운영 등에 따라 제반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위에 있는 자가 당연 승계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 위원을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소집) ① 운영위원회의 소집 시기는 다음과 같다.

1. 당해연도 이수심사 종목 신청 접수 후 15일 이내
 2. 기타 이수심사 운영과 관련하여 국립무형유산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
- ②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의한다. 다만 이수심사 종목 신청 접수 후 15일 이내에 과반수 이상 출석이 불가능할 경우 20일 이내 개의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국립무형유산원장은 당연직이 아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개인 사정으로 위원직 사임을 요청한 경우
2. 해외 출장, 질병, 사고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이수심사 관련 정보의 사전 유출, 이수심사와 관련한 금품수수 및 부정한 청탁 등 공정한 이수심사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제10조(수당과 여비) 운영위원회 위원에게는 국립무형유산원 수당 및 대가 지급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제3장 이수심사 실시

제11조(이수심사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국립무형유산원장은 매년 2월말까지 당해연도 이수심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재청 및 국립무형유산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② 이수심사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보유자와 보유단체를 대상으로 이수심사가 필요한 종목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③ 국립무형유산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지된 시행계획이 불가피한 사유로 실시가 불가능한 경우에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이수심사 평가자) ① 이수심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5명이 이수심사 평가자(이상 “평가자”라 한다)로 참여하여야 한다.

② 평가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인정된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2. 법 제9조 및 제31조에 따른 무형문화재위원회 위원·전문위원, 시도무형문화재위원회

위원·전문위원

3. 「고등교육법」제2조 및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학교에서 무형문화재와 관련된 학과의 시간강사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자
4. 「고등교육법」제2조 및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학교에서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및 석사학위 취득 후 관련 분야 연구소 또는 관련 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5.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에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6. 기타 이수심사에 평가자로 적합하다고 국립무형유산원장이 위촉하는 자

제13조(이수심사의 시기 및 장소) ① 매년 이수심사 시행계획 공고시 당해연도 이수심사 대상 종목과 함께 심사 시기를 공지한다.

② 이수심사 장소는 국립무형유산원, 해당 종목의 전승지역, 전수교육관(개인 공방을 포함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공시설, 기타 시설을 이용한다.

③ 이수심사 장소가 외부기관인 경우 장소 사용에 따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이수심사의 신청) ① 국가무형문화재 전수자가 이수심사를 받고자 할 때는〔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수심사 30일 전까지 국립무형유산원장에 제출한다.

② 이수심사 신청자는 국가무형문화재 종목의 전수교육을 3년 이상 받았음을 증빙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립무형유산원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신청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수정,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국립무형유산원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이수심사 7일 전까지 이수심사 대상 여부를 신청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15조(이수심사의 항목 및 지표) ① 이수심사에 따른 평가는 법 제26조제1항 및 영 제23조제3항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의 분야별 종목에 대한 이해도 및 그 기능·예능의 실연능력을 평가하며, 단체종목의 경우 실연능력에 보유단체 회원과의 합동시연능력을 포함한다. 다만 향토술담그기 종목의 면천두견주는 합동시연능력 평가를 제외한다.

② 평가자는 심사 대상 전수자의 종목 이해도, 그 기능·예능 및 합동시연능력 등을 평가하여 채점한다. 평가항목과 지표는〔별표1〕과 같다.

③ 이수 여부는 평가자의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한 점수가 만점의 70% 이상을 획득한 경우로 한다.

- 제16조(이수증의 발급)** ① 국립무형유산원장은 이수심사 결과 이수한 전수자에 대하여 「무형문화재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한다.
- ② 이수하는 국가무형문화재 종목의 기능·예능은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등의 인정을 위한 세부기준 고시’ [별첨 2]의 ‘국가무형문화재 종목별 실기능력 정도 조사지표’의 분야로 한다.

제4장 이수심사 결과 공개 등

- 제17조(이수심사 결과의 공개)** ① 이수심사 결과는 이수심사 후 15일 이내에 문화재청과 국립무형유산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이수증을 발급한다.
- ② 국립무형유산원장이 피평가자의 요청에 따라 이수심사 결과를 공개할 때는 종합점수, 평가자 의견을 제공할 수 있다. 이때 조사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제외한다.

- 제18조(이수증 발급의 취소)** ① 국립무형유산원장은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수자가 된 경우에는 이수증 발급을 취소하여야 한다.
- ② 제18조제1항에 따라 이수증 발급이 취소된 경우 이수증을 발급받은 자는 즉시 이수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 제19조(이수심사의 기록)** ① 국립무형유산원장은 이수심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학술자료의 확보 등을 위하여 이수심사 과정을 기록할 수 있다.
- ② 이수심사의 기록은 이수심사 내용, 과정 등에 대하여 녹음·사진촬영·영상녹화·문자(원고) 등의 방법으로 관련 기록을 수집·작성한다. 이를 위하여 관련 전문가, 단체 또는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기록하게 할 수 있다.
- ③ 이수심사와 관련된 채점표 및 평가의견 작성과 별개로 이수심사 기록을 위하여 작성된 원고(개인이 촬영하여 제출한 사진을 포함)에 대해서는 원고료 지급규정에 따라 별도의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20조(이수심사 자료의 보관)** 국립무형유산원장은 영 제23조제4항에 따라 이수심사에 관한 기록을 5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국립무형유산원 고시 제2016-3호, 2016.03.23.>

이 고시는 2016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심사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사진 (3.5*4.5)	성명 (한자)	()	종목 명칭	
	생년월일		신청 분야 (기능·예능)	
	연 락 처		전자메일	
	주 소			
전수교육을 받은 보유자·보유단체· 전수교육대학				
전수교육기간 (협업포털등록)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해당 종목 전승활동 (증빙자료 별도 붙임)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국립무형유산원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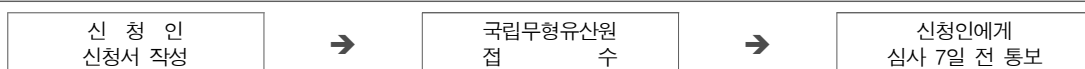
※유의사항

1. 이수심사를 응시하는 전수생은 보유자·보유단체·전수교육대학에서 3년 이상 전수교육을 수료한 자에 한함
2. 전수교육 협업포털 등록기간은 보유자·보유단체·전수교육대학에서 확인하여야 하며, 협업포털 등록 기간이 만 3년 미만인 전수생은 반드시 붙임 증빙자료(출석부 등)를 제출한 뒤 서류검토를 득하여야 심사에 응시할 수 있음
3. 2의 경우 증빙 서류 제출 누락 시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첨부서류

○ 신청자 이력서 1부

처리절차



[별표 1]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심사 평가 항목 및 배점(제15조 제2항 관련)

□ 이수심사 평가 항목 및 배점(총괄)

구 분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비고
예능 (개인)	종목의 이해	○ 해당 종목 이해도 - 종목의 역사 - 종목의 특성 - 종목 내용·구성	40점	
	실연능력	○ 해당 종목 실연 능력	60점	
	계		100점	
예능 (단체)	종목의 이해	○ 해당 종목 이해도 - 종목의 역사 - 종목의 특성 - 종목 내용·구성	40점	
	실연 능력	○ 해당 종목의 실기 능력(개인)	30점	
	단체협연능력	○ 보유단체 회원과의 협연 - 관련 악기·배역과 협연 능력	30점	
	계		100점	
기능	종목의 이해	○ 해당 종목 이해도 - 종목의 역사 - 종목의 특성 - 종목 내용·구성 - 종목의 기법	40점	
	시연(제작) 능력	○ 기술의 전통성, 숙련도 - 재료·도구의 이해 - 기법의 이해	60점	
	계		100점	

※ ‘향토술담그기-면천두견주’는 ‘기능-단체 종목’이나 협연 능력 평가 없음

□ 이수심사 평가 항목 및 배점(분야별)

1. 음악 분야

(1) 개인 종목

심사 항목	심사지표	세부지표	측정산식	배점 (100점)
실연 능력	실기능력	창법·연주법의 전통성	○ 창법·연주법의 전통성은?	30점
		가락·장단의 정확도	○ 가락과 장단의 정확도는?	15점
		창법·연주의 구사력 수준	○ 창법/연주의 구사력 수준은?	15점
종목 이해	종 목 이해도	해당 종목의 이해 정도	○ 해당 종목의 역사와 내용에 대한 이해는 어느 정도인가?	40점

(2) 단체 종목

심사 항목	심사지표	세부지표	측정산식	배점 (100점)
실연 능력	실연능력 (개인)	창법·연주법의 전통성	○ 창법·연주법의 전통성	15점
		가락·장단의 정확도	○ 가락과 장단의 정확도	10점
		창법·연주의 구사력 수준	○ 창법/연주의 구사력 수준	5점
	단체협연 능력	타 연행자와 일체화된 연행능력	○ 다른 연행자와 일체감, 어울림의 정도	30점
종목 이해	종 목 이해도	해당 종목의 이해 정도	○ 해당 종목의 역사와 내용에 대한 이해 정도	40점

2. 무용 분야

(1) 개인 종목

심사 항목	심사지표	세부지표	측정산식	배점 (100점)
실연 능력	실연능력	춤 동작의 전통성	○ 춤 동작의 전통성 보유 정도	30점
		춤의 조화성 및 정확성	○ 춤의 조화성 및 정확성 정도	20점
		공간과 춤의 어울림	○ 공간과 춤의 어울림 수준은?	10점
종목 이해	종 목 이해도	해당 종목의 이해 정도	○ 해당 종목의 역사와 내용에 대한 이해는 어느 정도인가?	40점

(2) 단체 종목

심사 항목	심사지표	세부지표	측정산식	배점 (100점)
실연 능력	실연능력 (개인)	춤 동작의 전통성	○ 춤 동작의 전통성 보유 정도	10점
		춤의 조화성 및 정확성	○ 춤의 조화성 및 정확성 정도	10점
		공간과 춤의 어울림	○ 공간과 춤의 어울림 수준	10점
	단체협연 능력	타 연행자와 일체화된 연행능력	○ 다른 연행자와 일체감, 어울림의 정도	30점
종목 이해	종 목 이해도	해당 종목의 이해 정도	○ 해당 종목의 역사와 내용에 대한 이해 정도	40점

3. 대규모 놀이 분야(단체)

(1) 놀이 연행자

심사 항목	심사지표	세부지표	측정산식	배점 (100점)
실연 능력	실연능력 (개인)	놀이 구성에 맞춘 짜임새 있는 연행 능력	○ 연행되는 놀이 상황, 기능, 구조 연행의 구현 능력 정도	30점
	단체협연 능력	타 연행자와 일체화된 연행능력	○ 다른 연행자와의 일체감, 연대의 정도	30점
종목 이해	종 목 이해도	해당 종목의 이해 정도	○ 해당 종목의 역사와 내용에 대한 이해 정도	40점

(2) 도구 제작자

심사 항목	심사지표	세부지표	측정산식	배점 (100점)
실연 능력	실연능력 (개인)	연행에 필요한 장치와 소도구 등의 제작 능력	○ 장치와 소도구별 제작 능력의 정도	30점
	단체협연 능력	타 연행자와 일체화된 제작 능력	○ 다른 연행자와의 일체감, 연대의 정도	30점
종목 이해	종 목 이해도	해당 종목의 이해 정도	○ 해당 종목의 역사와 내용에 대한 이해 정도	40점

4. 의례 분야(단체)

심사 항목	심사지표	세부지표	측정산식	배점 (100점)
실연 능력	실연능력 (개인)	전통적인 의식 절차의 정확한 구현 정도	○ 전통적인 의식절차 구현에 필요한 제반 요소(제물, 의례, 소도구, 제상 배치)에 대한 이해의 정도	15점
		의식 절차 수행의 숙련도	○ 의식 절차 수행의 숙련도	15점
	단체협연 능력	타 연행자와 일체화된 연행능력	○ 다른 연행자와 일체감, 어울림의 정도	30점
종목 이해도	종 목 이해도	해당 종목의 이해 정도	○ 해당 종목의 역사와 내용에 대한 이해 정도	40점

5. 연극 분야(단체)

(1) 춤·대사 등의 연행자

심사 항목	심사지표	세부지표	측정산식	배점 (100점)
실연 능력	실연능력 (개인)	대사의 구연 능력의 정도	○ 대사의 구연 수준	10점
		대사 구연과 가·무·악(歌舞樂)의 일체화된 연행 능력	○ 표현의 조화와 일체감 정도	10점
		춤 동작의 정확성과 표현 정도	○ 춤 동작의 정확성과 표현성의 정도	10점
	단체협연 능력	타 연행자와 일체화된 연행능력	○ 다른 연행자와 일체감, 어울림의 정도	30점
종목 이해	종 목 이해도	해당 종목의 이해 정도	○ 해당 종목의 역사와 내용에 대한 이해 정도	40점

(2) 탈·소도구 제작자

심사 항목	심사지표	세부지표	측정산식	배점 (100점)
실연 능력	실연능력 (개인)	연행에 필요한 장치와 소도구 등의 제작 능력	○ 장치와 소도구별 제작 능력의 정도	30점
	단체협연 능력	타 연행자와 일체화된 연행능력	○ 타 연행자와 일체화된 연행능력	30점
종목 이해	종 목 이해도	해당 종목의 이해 정도	○ 해당 종목의 역사와 내용에 대한 이해 정도	40점

(3) 악기 연주자

심사 항목	심사지표	세부지표	측정산식	배점 (100점)
실연 능력	실연능력 (개인)	연주법의 전통성	○ 연주법의 전통성	10점
		장단의 정확도	○ 장단의 정확도	10점
		가락·연주의 구사력 수준	○ 가락·연주의 구사력 수준	10점
	단체협연 능력	타 연행자와 일체화된 연행능력	○ 다른 연행자와 일체감, 어울림의 정도	30점
종목 이해	종 목 이해도	해당 종목의 이해 정도	○ 해당 종목의 역사와 내용에 대한 이해 정도	40점

6. 기타 놀이와 의식

※ 음악, 무용, 놀이, 의식, 연극 분야에서 전수자 해당 분야에 적합한 실연능력 심사 항목을 선택하여 심사

7. 음식 분야 심사항목 및 배점

심사 항목	심사지표	세부지표	측정산식	배점 (100점)
실연 능력	실연능력	음식 장식의 적합성	○ 음식 제작 과정의 적합성 정도	20점
		식재료 이용의 적합성	○ 식재료의 적절한 사용 능력	10점
		조리 기술의 숙련도	○ 조리기술의 숙련 정도	10점
		음식의 특수성	○ 완성된 음식의 맛의 수준	20점
종목 이해	종 목 이해도	해당 종목의 이해 정도	○ 해당 종목의 역사와 내용에 대한 이해 정도	40점

8. 무예분야(단체) 심사항목 및 배점

심사 항목	심사지표	세부지표	측정산식	배점 (100점)
실연 능력	실연능력 (개인)	동작의 정통성	○ 동작의 전통성 보유 정도	15점
		동작의 정확성과 구현 기술의 난이도	○ 구현 기술의 정확성과 난이도	15점
	단체협연 능력	타 연행자와 일체화된 연행능력	○ 다른 연행자와 일체감, 어울림의 정도	30점
종목 이해	종 목 이해도	해당 종목의 이해 정도	○ 해당 종목의 역사와 동작별 원리의 이해 정도	40점

9. 공예기술(개인) 분야 심사항목 및 배점

심사 항목	심사지표	세부지표	측정산식	배점 (100점)
실연 능력	실연능력	공정 재현 능력	○ 전통 연장 사용의 숙련도 ○ 공정의 적정성 정도	30점
		기술의 숙련도	○ 공정의 능숙도 정도	30점
종목 이해	종목이해도	해당 종목의 이해 정도	○ 해당 종목의 역사와 내용에 대한 이해 정도	40점